

## 5월 24일은 위험성평가 집중 홍보·점검의 날

- 제10차 현장점검의 날, 전국단위 위험성평가 확산 캠페인 함께 진행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와 안전보건공단(이사장 안종주)은 5월 24일 2023년 제10차 현장점검의 날\*에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‘위험성평가’를 집중 홍보·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을 실시한다.

\* 고용부·안전공단이 매월 2·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·감독

위험성평가는 노·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·이행하는 제도로,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.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적발·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‘위험성평가 특화점검’으로 개편한 바 있다. 이번 현장점검의 날부터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\*('23.5.22.)에 따라 중·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이 쉬워진 점을 강조하고, 방법·사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.

\* ▲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도입 등 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, ▲ 월·주·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상시평가 제도 도입, ▲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등

또한, 고용노동부는 6월 말까지를 “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”으로 정하고,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사업주·근로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약 1,6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업단지 인근이나 건설현장 밀집 지역 등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.

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“그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하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위험성평가를 잘 모르겠고, 알아도 어려워서 도입 못하겠다는 것이었다.”라고 하면서, “이번 위험성평가 제도개편을 계기로 중·소규모 사업장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이 지도·컨설팅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: 위험성평가 안내자료
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동현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용다솜 (044-202-8902)
		사무관	이철호 (044-202-8904)	
		주무관	정수빈 (044-202-8908)	
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	책임자	과 장	금정수 (044-202-8920)
		담당자	서기관	김현아 (044-202-8923)



# 산업현장 위험성평가, 이렇게 하세요!

위험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확보됩니다.

## 누가 하나요?

주도



사업주

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

참여



- 안전보건관계자
- 관리감독자(직장 조장 및 반장 등)
- 일반근로자
- 협력업체 관계자

## 언제 하나요?

### 1 최초평가

사업장 성립(또는 실착공) 후, 사업장 가동,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,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

### 2 정기평가

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

### 3 수시평가

설비·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

선택

### 새로운 평가 방식

2+3을 결합하는 새로운 평가

### 2 상시평가 (월·주·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)

- 월(月) 1) 노사합동 순회점검 2) 아차사고 분석 3) 제언제도 실시 → 평가
- 주(週)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→ 이행확인 및 점검
- 일(日)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→ 공유

## 어떻게 하나요?

### 사전준비

- 실시규정 작성
- 담당자·참여자 선정
-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

### 유해·위험요인 파악

- 노사합동 순회점검
- 아차사고 분석
- 제언제도 실시

### 위험성 결정

-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

###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

-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

### 공유·기록

- TBM,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